

전공외국어강좌운영규정

2015.02.25.제정 2018.07.01.일부개정 2018.12.12.일부개정 2022.03.18.전부개정
2026.06.18.일부개정

<학사관리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, 외국어 강의 환경에서의 학습 경험을 통해 내국인 학생의 외국어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공외국어강좌를 관리·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3.18., 2026.6.18.)

제2조(강좌 개설) 내국인 학생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공과목을 외국어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외국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18.7.1., 2018.12.12., 2021.6.1., 2022.3.18., 2026.6.18.)
[제목개정 2018.12.12.]

제3조(개설 제한) ① 강좌 개설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습, 설계시수를 포함하는 강좌
2. 외국어 관련 전공교과목
3. 외국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
4. 기타 교무처장이 지정한 강좌

② 수업평가 결과 점수가 7.6점 미만인 강좌 또는 담당교원에 대해서는 평가받는 학기로부터 최대 1년간 전공외국어강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22.3.18.]

제4조(신청방법 및 강좌 운영) ① 전공외국어강좌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어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하여 외국어 및 국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6.6.18.)

② 강좌 운영은 100% 외국어로 진행하여야 하고, 학기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좌운영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안 및 CQI보고서(국문)
2. 중간·기말 등의 시험 평가지 및 답안지 사본 2매 이상
3. 기타 강좌운영결과 제출 시 요청한 사항

③ 강좌운영결과 미제출 강좌는 전공외국어강좌 개설(승인)을 취소한다.

④ 수강학생들에게 학기말 시험 후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22.3.18.]

제5조(강좌운영 지원) ① 해당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업보조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2026.6.18.)

[전부개정 2022.3.18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5조제3항제5호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